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방사능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체계와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여 영유아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급식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공동검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함.(안 제10조)
- 라. 공공급식 안전을 위하여 급식안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여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천지역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 및 이에 준하는 인체에 유독성을 가진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50인 이하의 시설도 포함한다)
 -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급식시설”이란 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급식안전점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군구별 식품 검사용 고순도게르마늄측정기 등 검사장비 확보 및 검사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
 2. 검사방법의 원칙과 검사절차에 대한 사항
 3. 수입산 식재료와 인천 관내 생산 식재료 각각에 대한 검사계획
 4. 인천 관내 급식업체에 대한 검사계획
 5.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예방에 대한 사항
 6.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과의 협력, 지원에 대한 사항
 7. 검사결과 공표방법에 대한 사항
 8.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군구별 관내 급식시설의 식재료에 대하여 사전에 방사성물

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과 군수·구청장과 필요 경비 부담비율 및 역할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시, 군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공개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안전점검 종합계획 심의에 대한 사항
2. 공공급식 관련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관련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급식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공표와 권고기준치에 대한 사항
7. 품목별, 원산지별 우선검사순위에 대한 사항
8.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보건복지국장, 위생정책과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교 영양(교)사 단체, 교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 1명
4. 어린이집 부모, 학교 학부모 각 1명
5. 급식안전 모니터링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학교급식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8.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9. 그 밖에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공동으로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이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의 명의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된다.

② 시장이나 위원 5인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검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검사센터의 사

업수행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인정하는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공공급식 시설에 대하여 “방사능안전급식시설”임을 인증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급식을 위한 지원·권고) ① 시장은 학교 및 시설이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구와 교육청을 거쳐 급식시설에 공동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수행함에 있어 방사성물질 검사를 필한 인천지역 산 식재료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급식안전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모니터링단은 부정기 식재료 검수·공급업체와 공공급식시설의 현장을 점검하고 정기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링단을 교육감과 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방사성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식품위생법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법규 정비 대상	
관련 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

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2011.6.7. , 2013.3.23. >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이

하 "식품위생검사"라 한다)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 2013.3.23.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 업무범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 ③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2013.3.2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04호(2013.8.5))

7) 방사능 기준

핵 종	대 상 식 품	기준(Bq/kg, L)
요오드(¹³¹ I)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조제 식품	100
	유 및 유가공품	100
	기타 식품★	300
세슘(¹³⁴ Cs + ¹³⁷ Cs)	모든식품	370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특수 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방사성물질 검사 사업비

- 고순도게르마늄측정기 1대 = 150,000천원
- 검사요원인건비 1명 = 20,000천원
- 수거요원인건비 1명 = 20,000천원
- 식품수거비 700건×5,000원=3,500천원
-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수당 6명×70,000원=420천원
- 모니터링단운영비 152명×40,000원=6,080천원
- ※ 연간 650~700건 검사할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이며 검사건수에 따라 장비 및 사업비 증액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조례 상정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강병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방사성 물질 안전 처리비용 공공시설	200,000	353,500	507,000	660,500	814,000	2,535,000
	소계	200,000	353,500	507,000	660,500	814,000	2,535,000
재원 조달		200,000	353,500	507,000	660,500	814,000	2,535,000
국 비							
시비	소 계	200,000	353,500	507,000	660,500	814,000	2,535,000
	일반회계	200,000	353,500	507,000	660,500	814,000	2,53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